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13620
----------	-------

제출연월일 : 2025. 10. 16.
제출자 : 정부

제안이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는 중여로 보도록 하고,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하며,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부동산등 유상 거래 시 증여의제(안 제7조 제11항제4호 단서 신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함.

나. 회원제 골프장 승계취득 시 취득세 중과(안 제13조제5항)

회원제 골프장업을 등록하는 경우 및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회원제 골프장업 및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함.

다.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신고·납부(안 제20조제2항)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전에는 중과세액 또는 부족세액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된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라.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조정(안 제103조의20제1항)

1) 일반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는 1퍼센트,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각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

2)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00억원 이하는 2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각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

마.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등을 체납한 경우의 수탁자 물적납세의무 부과대상 확대(안 제119조의2제1항)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 위탁자의 재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부과되는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을 포함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25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5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55호) 및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상”을 “그 취득한 부동산등 전체를 유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대가가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의3제2항 중 “거래”를 “거래(제7조제11항에 따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시가인정액”을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6제2항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인이 아닌 자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를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및 등록된 골프장업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와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사실상 사용하는 그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를 “제13조의3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각각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 또는 제13조의2제1항의 세율”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를 “제13조의3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가인정액”을 각각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로 한다.

제71조제3항제4호나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93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본문 중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 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을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03조의3제8항 중 “국내주식”을 “주식”으로 한다.

제103조의19제2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 전단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을 “제2항 전단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 또 는 제3항에 따라 차감하는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같은 법 제57조의2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이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03조의20제1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억 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0만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3억9천800만원 +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 원 초과	65억5천800만원 + (3천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제103조의20제1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	세율
200억 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4억 원 +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 원 초과	65억6천만원 + (3천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제103조의23제1항 중 “4개월”을 “4개월(「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5개월로 한다)”로 한다.

제107조제2항제5호 전단 중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를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

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하 이호에서 “지역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로 한다.

제10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지로 하고,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제1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도시 · 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

2.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

④ 제3항제1호에서 “미집행”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못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가 의제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산세 · 가산금”을 “재산세 · 납부지연가산세”로, “신탁재산으로써”를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으로서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 및 제6항에서 같다)으로써”로 한다.

제128조제3항 중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을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계산식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4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2기분 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4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128조제4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계산식
제2기분 세액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147조제2항 중 “제118조(같은 조에 따라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제118조(같은 조에 따라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9조의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3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등 취득의 증여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1항 및 제1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골프장 승계취득 시 취득세 중과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골프장업 및 사실상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 경우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법인 등이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주택이 이 법 시행 이후 제13조의2제1항의 세율(제16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3항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지방소비세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거주자의 출국 시 주식 등 양도소득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19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법인지방소득세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

용례) 제103조의2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 제2항제5호 및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동력수상례저기구의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의 적용례) 제128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p>⑫ ~ ⑯ (생 략)</p> <p>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생 략)</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관 계인 간의 <u>거래</u>로 그 취득에 대 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 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하 이 장에 서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u>시가인 정액</u>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 할 수 있다.</p> <p>③ (생 략)</p> <p>제10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① (생 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법인이 아닌</u>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 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p> <p><u><신 설></u></p>	<p>⑫ ~ ⑯ (현행과 같음)</p> <p>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거래(제7조제11항에 따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 는 경우는 제외한다)</u>----- ----- ----- ----- <u>시가인정 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 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u>-----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u>----- ----- ----- ----- ----- ----- ----- -----.</p> <p>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p>
---	---

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제16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

-- 제13조의3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② -----
-----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 또는 제13조의2제1항의 세율
-----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 또는 제13조의2제1항의 세율

③ -----

<p>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u>제11조부터 제15조까지</u>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p>	<p>----- ----- ----- <u>제11조부터 제13조까지,</u> <u>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제14</u> <u>조부터 제16조까지</u>----- ----- ----- ----- -----.</p>
<p>④ ~ ⑥ (생 략)</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u>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u>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p>	<p>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 ----- ----- <u>제13</u> <u>조의3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u> <u>지</u>----- ----- ----- ----- ----- ----- ----- -----.</p>
<p>1. (생 략) 2. 삭 제 3. <u>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u></p>	<p>1. (현행과 같음) <u><삭 제></u></p>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
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② (생 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 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기한 까지 취득세를 시가인정액으로 신고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경정하기 전에 그 시가 인정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1조(납입) ① · ② (생 략)

③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43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

② (현행과 같음)

③ -----

-----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
----- 시가
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
55조-----
-----.

제71조(납입)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4. -----

에 따라 납입한다.	-----.
가. (생 략)	-----.
나. 가목에 따라 보전하는 시	가. (현행과 같음)
· 도 전환사업의 총비용에	나. -----
해당하는 금액을 제3항제1	-----
호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	-----
한 「지방재정법」 제29조	-----
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	-----
금(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	-----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u>대</u>	-----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 대
말한다), 같은 법 제29조의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
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하여 고시하는 금액-----
법」 제11조제2항 및 「세	-----
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	-----
항에 따른 시·도 교육비	-----
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	-----
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	-----
치단체의 장과 특별시·광	-----
역시·특별자치시·도 및	-----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
안분하여 납입한다.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p>④ (생 략)</p> <p>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p>	<p>④ (현행과 같음)</p> <p>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p>
<p>① (생 략)</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p>	<p>② -----</p>
<p>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p>	<p>-----</p>
<p>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p>	<p>-----.</p>
<p>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p>	<p>1. -----</p>
<p>가. (생 략)</p>	<p>-----</p>
<p>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소</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p>	<p>나. -----</p>

<p>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한다.</p>	<p>--. <단서 삭제></p>
<p>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p>	<p>2. -----</p>
<p>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라목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한다.</p>	<p>가. -----</p>
<p>나. (생략)</p>	<p>나. (현행과 같음)</p>
<p>③ ~ ⑯ (생략)</p>	<p>③ ~ ⑯ (현행과 같음)</p>

따른 금액에 가산한 이후에 전 단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 설>

③ 제2항 전단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 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차감액의 계산 방법, 이월 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
인이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같은 법 제
57조의2에 따라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공
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
라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
서 공제하는 금액을 이 조 제1
항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한 금
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으로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20(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와 같다.

1. 내국법인(「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

과세표준	세율
2억 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80만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7천800만원 +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억5천800만원 + (3천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2.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8천만원 +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억6천만원 + (3천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

제103조의20(세율) ① -----

-----.
1. -----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천800만원 +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억5천800만원 + (3천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2. -----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4억 원 +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억6천만원 + (3천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
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
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
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6. ~ 8. (생 략)

③ (생 략)

제108조(납세지)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
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1. ~ 3. (생 략)

4.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
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
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定
繫場) 소재지(정계장이 일정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
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
른 직장주택조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
하 이 호에서 “지역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조합원이 납
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
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
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을 말
한다. 이하 이 장에서 “위탁
자”라 한다]. -----.

6. ~ 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08조(납세지) -----

-----.

1. ~ 3. (현행과 같음)

4.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
적항의 소재지. 다만, 「수상
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
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에 따른 등록지로 하고, 그 밖
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

5. (생 략)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5. (현행과 같음)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도시 · 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

2.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

④ 제3항제1호에서 “미집행”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못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가 의제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	계산식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4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세액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2기분 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4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 ~ 3. (생략)

④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분을 차감한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	계산식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4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2기분 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4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 ~ 3. (현행과 같음)

④ -----

-----.

계산식	계산식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2기분 세액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⑤ (생략) 제147조(부과·징수) ①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147조(부과·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규정 중 제114조, 제115조, <u>제118조(같은 조에 따라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u> 및 제122조(제122조의 경우는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② ----- ----- -- <u>제118조(같은 조에 따라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9조의2 ----- ----- -----.</u>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의 결과

○ 지방세 수입(5년간) : + 17,117.2억원

구 분		연 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추	정	곤	란			
지출	법인 등 주택 유상취득 시 중과세 추징 절차 등 보완(안 제20조제2항)			추	정	곤	란		
	소 계(A)	-	-	-	-	-	-	-	-
수입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유상거래 시 적용 기준 개선(안 제7조제11항)			추	정	곤	란		
	회원제 골프장 승계취득 과세 합리화(안 제13조제5항)			추	정	곤	란		
	국외전출자 과세 대상 확대(안 제103조의3제8항)	-	+2.3	+2.3	+2.3	+2.3	+9.2	+2.3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환원(안 제103조의20제1항)	-	+4,277	+4,277	+4,277	+4,277	+17,108	+4,277	
	금전매수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안 제107조제2항)			추	정	곤	란		
	신탁재산의 물적납세의무 범위 확대 및 규정 명확화(안 제119조의2제1항)			추	정	곤	란		
	소 계(B)	-	+4,279.3	+4,279.3	+4,279.3	+4,279.3	+17,117.2	+4,279.3	
총 비용(A-B)		-	△4,279.3	△4,279.3	△4,279.3	△4,279.3	△17,117.2	△4,279.3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제7조제11항 (납세의무자 등)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저가 거래 등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2	제13조제5항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사치성 재산인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취득 시 취득세 중과
3	제20조제2항 (신고 및 납부)	주택 취득 후 사후적 사유 발생에 따라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자발적 신고납부 유도 및 가산세 부담 완화
4	제103조의3제8항 (세율)	국외전출자의 과세대상에 해외주식 포함
5	제103조의20제1항 (세율)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율 0.1%p씩 인상
6	제107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는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조합) 규정을 개정하여 다른 조합 간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금전 매수 신탁재산에 대해 납세의무자로 보는 조합(수탁자)의 범위 확대
7	제119조의2제1항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체납 시 강제징수 회피 방지를 위해 수탁자에게 부과하는 물적납세의무 대상 범위를 확대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제7조제11항 (납세의무자 등)	X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저가 거래 등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것으로 부과 대상 및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증가하는 세수 규모 추정하기 곤란
2	제13조제5항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X	사치성 재산인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는 것으로 부과 대상 및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증가하는 세수 규모 추정하기 곤란
3	제20조제2항 (신고 및 납부)	X	주택 취득 후 사후적 사유 발생에 따라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자발적 신고납부 유도 및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부과 대상 및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감소하는 세수 규모 추정하기 곤란
4	제103조의3제8항 (세율)	○	
5	제103조의20제1항 (세율)	○	
6	제107조제2항 (납세의무자)	X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는 신탁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조합) 규정을 개정하여 다른 조합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전 매수 신탁재산에 대해 납세의무자로 보는 조합(수탁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부과 대상 및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증가하는 세수 규모 추정하기 곤란
7	제119조의2제1항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X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체납 시 수탁자에게 부과하는 물적납세의무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강제징수 회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부과 대상 및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증가하는 세수 규모 추정하기 곤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비용추계의 상세내역과 동일하며, 개정 법률안이 '26.1월에 시행된다는 전제하에 작성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유상거래 시 적용기준 개선(안 제7조제11항)

○ 추정곤란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저가 거래 등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것으로 부과 대상 및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증가하는 세수 규모 추정하기 곤란

2) 회원제 골프장 승계취득 과세 합리화(안 제13조제5항)

○ 추정곤란

- 사치성 재산인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는 것으로 부과 대상 및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증가하는 세수 규모 추정하기 곤란

3) 법인 등 주택 유상취득 시 중과세 추징 절차 등 보완(안 제20조제2항)

○ 추정곤란

- 주택 취득 후 사후적 사유 발생에 따라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자발적 신고납부 유도 및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부과 대상 및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감소하는 세수 규모 추정하기 곤란

4) 국외전출자 과세 대상 확대(안 제103조의3제8항)

○ 세수증가 : +9.2억 원(연평균 +2.3억 원)

- 국외전출세 최근 신고 실적, 국내주식 대비 해외주식 비중을 고려한 국세 추계치의 10%를 기준으로 세수 추계* * 연도별 추계액(억원) : '27년+2.3, '28년+2.3, '29년+2.3, '30년+2.3

5)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환원(안 제103조의20제1항)

○ 세수증가 : +17,108억 원(연평균 +4,277억 원)

- 변경된 법인지방소득세 세율(구간별 0.1%p 인상)을 적용하여 국세 추계치의 10%를 기준으로 세수 추계* * 연도별 추계액(억원) : '27년+4,277, '28년+4,277, '29년+4,277, '30년+4,277

6) 금전매수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안 제107조제2항)

○ 추정 곤란

-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는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조합) 규정을 개정하여 다른 조합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전 매수 신탁재산에 대해 납세의무자로 보는 조합(수탁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부과 대상 및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증가하는 세수 규모 추정하기 곤란

7) 신탁재산의 물적납세의무 범위 확대 및 규정 명확화(안 제119조의2제1항)

○ 추정 곤란

-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체납 시 수탁자에게 부과하는 물적납세의무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강제징수 회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부과 대상 및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증가하는 세수 규모 추정하기 곤란

IV. 부대의견

○ 해당없음

V. 작성자

○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여환수	천혜원	서은주	김정선 국장 직무대리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여환수	044-205-3838	yeohwans@korea.kr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방안

I.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해당 세법은 일반적인 조세 제도에 대한 법률로 비용을 수반하는 세출 법안과 다르므로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구 분	연 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 조세수입·세외수입 또는 국채발행·차입		해	당	없	음		
○ 회계·기금 간 전입		해	당	없	음		
○ 기존 예산·기금의 항목 간 조정		해	당	없	음		
○ 기타		해	당	없	음		
〈합 계〉							

II.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해당 세법은 일반적인 조세 제도에 대한 법률로 비용을 수반하는 세출 법안과 다르므로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구 분	연 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 중앙정부							
○ 일반회계		해	당	없	음		
○ ○○특별회계		해	당	없	음		
○ ○○기금		해	당	없	음		
□ 지방자치단체							
○ 일반회계		해	당	없	음		
○ ○○특별회계		해	당	없	음		
○ ○○기금		해	당	없	음		
□ 기타							
○ 기타		해	당	없	음		
〈 합 계 〉							

III.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1. 중앙정부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 해당없음

IV. 부대의견

- 해당없음

V. 협의사항

협의시점	협의기관	주요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
-	-	해당사항 없음 (세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

VI. 작성자

○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여환수	천혜원	서은주	김정선 국장 직무대리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여환수	044-205-3838	yeohwans@korea.kr